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2. 18.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2월 3일

나. 발 의 자: 이순우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5년 2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2. 17.)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의 제명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전체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
-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중 하나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2022.12.31. 시행 2024.01.01.)됨에 따라 개정된 제명으로 규정하였음. 한편, 조문 중 “위임된 사항” 문구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안에서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 부분만 규정했을 뿐,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없음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함
  - 또한 목적규정은 해당 자치법규의 해석 지침이 됨에 따라, 입법취지나 목적이 종합적·포괄적으로 나타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쓰레기줄이기”의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
  -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제1항은 기존 간결하지 않은 문장을 정비하여 핵심 사항만 규하였으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대로 붙여 썼으며, 제3호에서는 “시행”계획을 “집행”계획으로 정정
  - 안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은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및 서울시 시행 계획 명칭을 「서울특별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명칭으로 정정
  - 안 제4조(자금 등의 지원)제1항은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로 변경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함
  - 한편 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환경부훈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에는 “경제적유인 제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6개 자치구도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해당 조항은 우리 구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인 「쓰다점빵」에서 종량제봉투를 제공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2021.09.24. 시행 2022.03.25.)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로 전부개정(2022.12.31. 시행 2024.01.01.)됨.
-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맞추어 인용조항 및 법률제명 등을 정비하였으며,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앞에 주요 내용에서 조항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 법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8
----------	-----

발의연월일: 2025. 2. .

발 의 자: 이순우, 이성수, 차인영

이규선 · 유승용 의원(5인)

## 1. 제안이유

상위법의 제명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전체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
- 나.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4조)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순환기본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자원재활용”을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활용 가능자원”을 각각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실행계획”을 “집행계획”으로 한다.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으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순환경제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자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을 “자원의 재활용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보상금,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자원순환 기본법</u>」 및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u></p> <p>②<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u></p> <p>1. <u>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u></p>	<p>제1조(목적) ----- 「<u>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u>」 및 「<u>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u>」의 ----- ----- <u>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u>----- ----- -----.</p> <p>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u></p> <p>②----- ----- ----- -----.</p> <p>1. <u>재활용가능자원</u>----- -----</p>





단체에게 장려금·보상금,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